

제427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0)

##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 2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2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2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 2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2
-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2
-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 3

1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	52
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	52
12.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	52
1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	52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	52
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	52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	52
1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0) .....	52

---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무부장관후보자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안건들을 채택하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8.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7월 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16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18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하여 54개 기관 1065건이고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47개 기관 1032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은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7월 11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계속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9.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14시05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예원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님이십니다.

끝으로 횡문규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 그리고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려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보고 계신 국민들도 국회가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마련된 오늘 공청회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을 직접 피해 당사자로 만들었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미 작년 8월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검토와 진술인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들은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숙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 이후 검찰이 해체되고 나면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안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제정법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공청회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추후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도 포함해서 1소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은 속도와 방향 둘 다 중요합니다. 추석 전에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적법절차 확보는 물론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에 둔 검찰개혁의 입법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법안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추후 질의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국혁신당의 법안과 민주당의 법안을 함께 제대로 심사하면 분명히 서로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실시계획서 채택된 안에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횡운하 의원

님, 차규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이 각 발의한 안이 다 의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인께서 진술할 때 그 법안을 참조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주로 참조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공청회에도 그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소위에 회부해서 논의되는 안은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법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9항 안건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관련된 공청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 아닙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검토를 하는 공청회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이 안건을 보니까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10항부터 17항의 고유법안들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검찰개혁 법안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은 우리가 이미 1차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해서 아직 성과를 다 거두지도 못한 상태고 오히려 일선에서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차 검찰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법안들이, 4개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장에서도 많은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엇갈리고 있고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검찰개혁안 자체는 문제가 많다라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좀 더 심도 있게, 어쩌면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 3차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돼야 되는데 마치 오늘 이 분위기로 봄에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또 법안을 바로 올려서 이제는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완수한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추석 전에 열개를 만들겠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77여 년간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또는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마치 정해진 스케줄대로, 목표를 정해 놓은 대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가는, 형식적으로 공청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르륵 그냥 정해 놓은 대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동안 존경하고픈, 또 이렇게 할까요. 이춘석 위원장님, 정말 이 문제는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오늘 9항 안건까지 공청회를 심도 있게 나누고 나머지 법안 상정은 다음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공청회도 가급적이면 1차로 끝내지 마시고 2차, 3차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살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검찰개혁 법안이 우리 논의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거고 또 야당 측에서 요구한 법안도 올라와 있고 오늘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게 올라왔으면 제가 1소위로 바로 회부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합의돼서 공청회를 하고 있고 이게 제1소위로 넘어가면 1소위에서 이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들을 거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1소위에서 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제1소위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안을 저희가 대체토론하고 1소위로 넘겨 드릴 테니까 1소위에서 우려하시는 점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말씀……

○**김용민 위원** 아니, 같은 얘기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진술인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한테 많은 시간을 허용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제약돼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어서 각 진술인별로 7분 동안 발표시간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되어 있으니까 진술인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실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예원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예원**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비영리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 변호사로서 학대 피해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리하면서 경험한 실무상 문제를 바탕으로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이 법안들을 옹호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에 경찰이 민생 사건을 거의 다 처리했기 때문에 경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제도의 탄생 이유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통제입니다. 건국 이래 70년간 경찰은 민생 사건을 다 처리하지 않고 송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경찰이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기소해 오다가 2021년부터 경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보이는 사건을 불송치하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1차 수사기관이 보기에 혐의가 있어 보여서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최소한의 보완조치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능하고 경찰은 무능하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두 기관의 탄생 이유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경찰이 수사통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서민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학생을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힘자랑만 한 셈이지요.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인지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인 수사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됩니다. 경찰은 직접수사에 집중,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국민의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줄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됩니다.

둘째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이미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주장을 수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2017년 정도부터 등장해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법안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인지수사권,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통제를 위해서 검토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수사로 나뉩니다. 앞의 직접수사 개시는 1~2% 정도 되는 특수부 사건으로 기소까지 브레이크 없이 연결되면서 남용과 부작용이 커던 것 맞습니다. 반면 뒤의 보완수사는 98% 정도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1차 수사기관이 놓치거나 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충실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을 해야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이 보완마저 막고 기소를 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판결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 직접수사개시권을 한정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소 분리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에 자정 기회를 줬지만 검찰이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더 검찰권을 남용했으므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일반화에서 비롯된 균형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논하는 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검찰을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것밖에 못 보냐 하고 검찰이랑 계속 싸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검사에 임관하려면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검사 임관 시험을 별도로 통과하고 법무연수원에서 1년 동안 꼬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도시에 67개 검찰청이 법원 옆에 설치되어 있고 총 2000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특수부 검사는 50명 정도로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반 형사부 검사를 특수수사에 무분별하게 차출시킨 기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분노합니다. 차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없애서 모든 부서를 형사부로 만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급하게 해경을 해체한 후에 부작용이 심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을 생각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부작용의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그 부작용의 자세한 내용은 양홍석 변호사님의 내용으로 대체해 드렸습니다. 참

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검사의 공익적 기능이 증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청구 등 검사가 기존에 담당해 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가 대리하는 평범한 시민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듭니다.

중수청이 신설되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의 개시가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더 정확히는 직장인의 생리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일부 주목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별로 심하지 않은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타 기관도 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서로 미루며 개시하지 않습니다. 국수위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 증거가 없어지거나 중요 참고인이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거대한 1차 수사권이 탄생하는데 오히려 수사통제가 형해화됩니다. 수사통제라는 것은 ‘잘 수사해라’ 이런 잔소리나 ‘징계하겠다’ 이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해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통제를 말합니다.

중수청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을 통한 수사통제만 가능한데 고소·고발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지요. 고소·고발은 수사단서, 그러니까 입건 경로의 일부일 뿐입니다. 70% 정도가 112 신고로 입건됩니다. 풍문이나 소문으로 들어온 사건도 수사해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수사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의신청을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보완해 보고 유죄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 30조, 이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선해하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지역 중수청에 이의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수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또 기각당하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서 돈이 많이 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송치되면 끝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법은 마지막 믿음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이대로 통과되면 제가 지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 최후의 보루를 잃게 됩니다. 검찰이 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차 수사권으로 몰리는 거대한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도 못 한 채 기소가 이루어지고 중수청과 국수위가 생기면서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피해를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위원장 이춘석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김예원 알겠습니다.

피해를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입습니다. 형사사법체계는 그 사람들이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줄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지겠다라는 확답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김예원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김필성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이게 논점이 매우 많은 이슈인데요, 지금 김예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통제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글을 썼는데 요지 위주로 최대한 짧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수사권, 공소제기권, 형집행권을 독점하고 검찰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종전에는 법무부였는데 법무부를 직제상,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고 사법경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가시화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했고 검찰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경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남겨 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사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이걸 기획할 때는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지냈지요. 윤석열 정권을 지내면서 보충적·이차적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검찰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역행이 이루어졌고요, 역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나 한계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검찰 조직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10년 넘은 통계로 기억을 해서 현재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처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을 때 검사 아닌 검찰공무원의 약 90% 이상이 수사 관련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검찰에 수사 관련 기능이 남겨져 있는 한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현 조직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수사라는 게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수사 현실이라는 게 있고 수사를 이끄는 법적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법체계나 법 현실 같은 것들이 현 단계에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체계를 바

꿈으로써 법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건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 놓는 구조에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뭐 저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관련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을 하고 공소제기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보완수사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경찰의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실은 논리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이번에 와서 대두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검찰이 경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경찰통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만약에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할 경우 경찰이 비대화되고 경찰에 수사에 관련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 새로운 검찰로 변해서 권력 조직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까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기획된 내용은, 다 입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경찰 조직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 처음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사 권한을 나누고 수사를 껏는 방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각 단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그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국가경찰위원회가 여전히 지금 자문기구로 남아 있거든요. 입법적으로 다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느냐하면 검찰이 어느 정도 보완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모두 없앨 경우에는 지금 특사경이라든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지고 새로 신설되는 여러 경찰 조직들의 수사 보완이나 수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여러 경찰 단위가 서로 경쟁해서 수사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권의 조정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수사권의 기본이나 아니면 원칙 같은 것들을 정해서 누가 먼저 우선 수사권을 갖는지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실제 개별 사건에 있어서 각 경찰들의 권한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조직이 특별한 일정 정도 이상의 우월한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통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가

경찰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체가 경찰이라서 경찰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 하나의 검찰처럼 전체 경찰을 수직적으로 거느리는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지금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 정권의 교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윤석열 때 경찰국 케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정도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이나 다른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경찰의 운영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아마 지금 하면서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별씨 끝났네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인…… 검찰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실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경찰이 서로 안 하고 들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독립된 별도의 감찰기구와 별도의 수사 적정성 심의기구를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경찰이 경찰 내부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삼자 입장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갖고 검찰을 감찰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구의 역할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경찰과 독립된 방식으로 수사의 적정성이나 심의 그다음에 자연 또는 유착 관계……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필성 예.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구가 현재 법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필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종민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진술인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장을 받고 검사로 20년 그리고 변호사로 지금 10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수사권입니다.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갔지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다음에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그래도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경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개혁이 지금까지 잘못된 검찰개혁 논의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검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검찰을 자꾸 수사기관으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군요, 이 책이 2011년에 제가 참여해서 집필했던 '검찰제도론'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법무부장관 하셨던 김종구 장관의 총괄하에 각 나라의 검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했고 아주 완성도가 높아서 이 해에 학술원 우수도서로까지 선정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의 일부입니다.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사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제도는 1895년 우리나라 제1호 갑오경장 이후 탄생한 재판소구성법부터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따지면 검사제도라는 것은 100년이 넘는 제도지요.

그리고 검찰제도는 국제표준이 이미 존재합니다. 2000년에, 제가 진술문에도 첨부해 놨습니다마는 유럽평의회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국제표준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폐지는 현재 헌법상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민주당 검찰개혁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조, 제18조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근거 없이, 감사원 같이 직무감찰을 하려고 그러면 헌법상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상 근거 없이 무슨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조사에 불응할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린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행안부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경찰 국가로 가는 것이지요.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수본과 중수청 모두 행안부 소속으로 됨으로써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와 통제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결합할 때 어떤 결과가 될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 국내정보가 폐지된 상태에서 정보를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지난 6월 달에 16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겠다라고 했던 의정부경찰서 경찰관이

뇌물 2억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의 심각한 난맥상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이 잘 얘기하셨듯이 수사 실무상의 대혼란이나 수사의 장기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권범죄라든지 부패범죄 같은 중대범죄도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과연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의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 어느 한 수사기관도 폭주할 수 없도록 사법통제 기능도 완성하면서 효과적인 수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중수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은 지금 현재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 FBI나 마약수사국(DEA) 같은 경우 전부 연방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고, 영국도 중대범죄수사청(SFO)는 법무부 소속으로 그다음에 범죄수사청(NCA)은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되고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속해야 되고 범죄피해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모성준 판사의 ‘빨대사회’,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직 판사님이 우리나라에 현재 얼마나 많은 범죄피해가 있는가, 특히 사기범죄 그다음에 코인 같은 걸로 장난치는 거대 범죄자들이 전혀 통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샤를르 드 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검찰제도는 지난 7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무조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효과적인 사법, 인간적인 사법, 현대화된 사법,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사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종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문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황문규**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사위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진술이 완성도 높은 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조그마한 참고가 된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먼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되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하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아니라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

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그간 보여 준 모습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심지어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스스로 경찰과 같은 직접수사기관이 된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작동해 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에 길들여지고 고정화된 우리의 인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수사권 및 소추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에 구체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이행되어 온 과정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이 배제된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집중하도록 판사의 기능을 순수하게 만든 것처럼 검찰에 집중된 기능을 단순하게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공소청과 중수청을 동일한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무늬만 수사·기소의 분리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자칫 무늬만 수사·기소의 분리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는 외형만 수사·기소의 분리일 뿐 실질은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수사·기소가 통합된 형태나 다름없습니다.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수사·기소의 통합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리고 향후에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인사를 통해 중수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인적자원과 기능을 분리하려는 수사·기소의 분리 취지에 역행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중수청에 영장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한 검사를 둘 때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사·기소의 연결 가능성 최대치로 열어 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독재국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한 수사·기소의 분리가 현행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공판부를 공소청으로 하는 사실상 검찰 조직의 격상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이 무늬만 수사·기소의 분리가 되는 것을 경

계해야 합니다.

넷째,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의 위험은 물론 향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행정조사 수준의 필요한 조사는 허용하되 그것도 법률로 필요한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사 수준의 필요한 조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그에 필요한 수사인력을 별도로 두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완수사권이 자칫 종전의 수사지휘권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수사를 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지휘권 요구는 필연적으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전건 송치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자칫 종전의 검경 갈등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은 수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국민참여재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등한 수사기관이어야 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에는 검사를 두어 스스로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거나 특사경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수사기관의 지배적 또는 우월적 지위로 수사 생태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각기 자신의 수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동일하게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즉 중수청도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수사권이 있는 수사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입법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수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의 경우도 인적 수사 대상을 한정하되 한정된 인적 수사 대상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수사권 이외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 또는 불필요한 이중수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난 12·3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수사권 논란은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다원화된 수사기관, 경찰, 해양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는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 이외에 엉뚱한 곳에 한눈팔지 못하게 하는 통제장치인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입니다.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법은 이미 수사권 다원화 시대를 예고했는데 지난 정부의 법무부, 검찰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논의할 때입니다. 찬성은 물론 반대의견까지도 경청하며 디테일에서부터 정밀하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황문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준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김종민 위원님, 우리가 2010년도, 15년 전에 충청도에서 같이 지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많은 우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종민 예.

○박준태 위원 그 당시에 검찰이 특별수사 때문에 망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어떤 표적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지면서 드디어 정말 망하는 날이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저는 유럽식, 독일과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식, 그것이 올바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박 위원님과 그때 지청장으로 같이 근무할 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이고 또 김용민 위원님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는 일관되게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문규 교수님!

○진술인 황문규 예.

○박준태 위원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질문을……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김예원 변호사님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왜 잘못됐

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황문규** 공소청이 생기더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어느 정도의 수사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을 ‘수사’라고 표현할 경우에 그간 검찰에서 보여 왔던 모습은 이것이 자칫 우회적인 방식으로 직접수사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김예원 변호사님이 말씀하는 보완수사적 기능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를 좀 바꿔서라도 권한 남용을 못 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황문규** 예, 맞습니다.

다만 ‘수사’라는 표현과 ‘조사’라는 표현은 염연히 구별되고 또한 강제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지요?

**○진술인 김필성**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권의 폐해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싸우셨던 분인데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소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경찰이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텐데, 그러면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가 국민들의 권리보호 차원,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경찰은 해도 되지만 검찰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김필성** 이것은 아까 김종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나라든 행정 절차나 행정제도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교법제 쪽으로 비교를 할 때 영국의 시스템이나 독일의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제도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절충안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뀐 게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검찰제도, 검사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최근에 어떤 단점을 내보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경찰을 사실은 수족처럼 부려 오면서 군림하는 역할을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나 폐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수사권 또는 일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을 남겨 놨던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사실은 거의 검찰을 개혁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경우로도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

요, 지난 정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한 번 끊어 주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검찰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 역사적 단절을, 끊고요. 그리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종래에 진행을했던 수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현재까지 있었던 검찰의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영국하고……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초과됐습니다.

○진술인 김필성 예, 알겠습니다.

영국하고 독일하고 제도가 많이 다르지만 지금 각자 돌아가는 방식으로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는 경험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경험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경찰로 수사권을 모두 넘긴 다음에 경찰이 수사권 남용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이 주로 사법절차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가 IOPC 같은 영국의 경찰 통제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실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부분은 그런 데를 닮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영국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콜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추천 절차가 국회 선출 4인입니다. 그러면 집권당에서 최소 2인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객관성,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라면 지금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진술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종민**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 현재 지금 검찰청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개악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설립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개악된 형태의 수사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박준태 위원** 이것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아도 국민 상식 수준에서 봐도 뭔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11명을 떠받드는 실무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처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또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집권당 의지대로 구성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실무 인원들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면 수사기관의 권력 견제장치는 어디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물론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 할 수 있는 장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도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수사의 통제라는 것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강제수사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의 선정, 수사의 진행 그다음에 수사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이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법통제장치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집권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수사구조가 됨으로써 수사가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박준태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법안의 내용 중에서도 국수위가 수사와 관련해서 미친한 것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관을 감찰하고 징계하고 재수사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권 인사를 수사한 수사관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조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정권에 반하는 기업이나 특정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공수처·중수청 이런 3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진술인 김예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 보면 사회적인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대체로 법대를 나오셨거나 법조인이시거나 해서 이런 것에 큰 벽을 못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 평범한 분들은 경찰이 검찰과 어떻게 다른지,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지만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형사사법체계는 그런 분들의 역울함을 풀어 주는 체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예요. 영국처럼 사인이 소추할 수 있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국가가 온전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 업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권이라는 게 결국 자원 분배의 문제인데 이것을 큰 권력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저절로 수사통제가 된다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검찰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결국 그 수사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균질한 수준으로 전국 단위로, 어디서 일차 수사가 진행되었건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여야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민 위원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김필성 변호사님,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마치 집권하는 여당이나 정권이 장악을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 검찰제도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집권하면 검찰 인사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정부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최소한, 뭐 다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에서 위원 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적어도 2명은 야당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장악력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의 장악력이 훨씬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진술인 김필성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알려진 것처럼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 3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3명은 국회가 지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과반수가 결국은 집권 여당이, 만약에 여야 일치인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하는 건데 이게 헌법이 집권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 구조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많은 경우 디바이디드 거버넌트(divided government)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 김용민 위원 다른 게 더 있어서요.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한번 볼까요.

검찰개혁의, 검찰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1900년대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검찰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가 미군정, 그 다음 보여 주시지요.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결국 검찰팟쇼를 가지고 온다’, 이것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다 논의가 있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민의힘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선배 의원님 되실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 다 동의를 이미 진작 했습니다. 먼저 법도 내기도 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하셨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광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래서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날 보니까 토론회까지 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축사를 했지요. 보여 주시지요.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 광상도 의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특히 광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돼서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국민 관점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실까요. 됐습니다. 전 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지금 보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만 두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7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 왔던 그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하나 더,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의견을 한 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행안부나 경찰이 비대화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행안부에 중수청을 우리가 아예 안 만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로 갑니다. 맞지요?

○진술인 김필성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온지 아니면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다 집중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중대범죄 수사, 특히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노하우를 그래도 유지해 가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나온지 여기에 대한 입장도 짧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필성 짧게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신경쓰는 게 뭐냐면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마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다거나 또는 검찰이 지금 밉보였으니까 검찰을 혼내 줘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공소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 이론적인 그다음에 연역적인 그런 제도적 고민들 끝에 나온 결론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한두 해 묵었던 그리고 한두 해 경험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지금 김용민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법체계 내에서도 논의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속성 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것 말씀 일단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로 의존성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경찰로, 지금 현재 저희가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몇 년 지난 것을 점검해 보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문제점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실무 얘기 들어 보면. 첫째는 국가수사본부에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종래에는 수사를 검찰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역량이 검찰이 뛰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검찰이 원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살려서 지금 문제없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지금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의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인 김필성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지금 만드는 이유는 검찰로부터 이제까지 검찰이 주로 해 왔던 특수범죄에 대한, 특수부의 중대범죄에 대한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의 수사인력들을 분리해서 별도의 관청을 만들고 그 관청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검사들만의 문제인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검찰을 도구로 이용했던 역대 정권들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검찰이 그렇게 한, 이런 비판을 불러올 정도의 그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정치권이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춘석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검찰을 폐지하자 그러면 정치검찰은 또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권도 있지만 막강한 인력 또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력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정치경찰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치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악순환이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을 끊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사권의 문제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수사기관의 인사권의 문제, 지금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들을 보면 다 행안부 소속이다 그다음에 법무부 소속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 산하다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을 좀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임용과 승진에 있어서 어떤 중립적인 그런 기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저는 영원히 이런 ‘수사기관을 개혁하자’ 자꾸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김종민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고요. 지금까지의 구조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중앙집권적인 검찰,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만들어서 전부 다 전국의 검찰, 전국의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가 권위주의 시대부터 내려왔던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인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같은 그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대통령 내지는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위원회에서 행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독립기관인 사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등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가 핵심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2023년도 여론조사인데 거기 보면 검찰개혁에 도대체 뭘 개혁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따져 보니까 1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부당하게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수사·기소 분리는 보

니까 10개 항목 중에서 여덟 번째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법 관련해서 지금 4개의 법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형사소송법하고도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충돌되는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차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하면서 좀 차분하게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좀 급속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김종민**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1호 개혁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었는데 공수처가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너무나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변호사인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됨으로써 돈은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됐다는 그런 실무와 디테일에 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전현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한 번씩 왔다 갔다 할게요.

○**전현희 위원**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다른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력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레 부패가 되기 마련이고 그동안 그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적으로 부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책을 들어 보이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에 상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안 심의·조사권하고 표결권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원리고요.

○전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대다수가 생각하는데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필성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아까…… 민주주의의 원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검찰이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제 권한인 형사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사실 어긋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사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사권을 독립시키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예외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관철시키고 그리고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수사·기소 분리도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력 견제 수단으로서 도입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에 관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현재 법안을 보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임명하지만 사실상 구성은 국회, 대통령,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각각 추천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구조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국회, 대통령 그리고 법원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사실상 신분과 임기를 보장하면서 직무의 독립성을 두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내용을, 의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충분히 이런 공소청이나 중수청, 국수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황문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 지나치게 또 경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그동안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수평적으로 행안부나 경찰로 옮겨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관을 독립기관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권력의 집중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진술인 황문규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있는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같이 비대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즉 경찰개혁의 시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찰개혁의 강도에 따라서 자치경찰제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아가는 형태라면 경찰권이 전국 지금 현재 18개로 분산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경찰청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찰권 비대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필성**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만들어지는 기구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경찰권과 행정경찰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게 되고요, 사법경찰에 관련된 것들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를 하고요. 행정경찰과 인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행안부라든지 각 관련 부처에서 통제하는 이중적 통제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경찰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실질화됩니다. 이원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붙잡고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는 오히려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마무리하셨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하시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박은정 위원님……

○**장동혁 위원** 오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곽규택 위원님 지금 바로 질의 가능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김예원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변호활동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여러 말씀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변호사를 했는데요.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수사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막상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사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시행됐어요. 됐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슈였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사건은 적체되고 그리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억울한 말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해 본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그래서 검사제도를 없애야 되니까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주로 피해자 쪽만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

해자들이 겪는 가장 지금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서 수사하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것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정말 그 수사기관들상의 어떤 평통, 사건을 그냥 보내고 받고 그것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경험하신 예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술인 김예원**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는 게 서민들한테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변호사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형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 대리를 하기가 무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늘어질지를 모르고 3년, 4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많고 그런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는 수사통제에 대한 부분,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통제는 뭐냐 하면 내가 고소를 했는데, 내가 뭔가 범죄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국가가 그 수사내용을 한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가 뭔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완해야 될 게 있다든가 너무 심하게 한 게 있다든가 그런 것도 위법성을 털어 내야 되고 그런 거를 수사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사통제가 작동했던 방식이 전건이 송치돼서 검사가 처음부터 그걸 다시 읽고 ‘아, 이건 너무 심했다’ 그러면 위법성을 시정하고 아니면 ‘이건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사지휘를 통하여나 직접수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1차 수사기관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다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놓고 보니까 그게 100이라고 하면 지금 1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체 1년에 160만 건 정도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중에 고소·고발로 입건되는 사건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2만 건 정도가 고소·고발로 발생이 되는데 고소·고발로 된 사건 중에 불송치되는 사건이 47.5% 정도입니다. 그러면 15만 건은 불송치되지요. 그런데 이의신청은 연간 통계를 따져 봤을 때 불송치 사건의 10%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만 5000건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이 법안에서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 사건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밖에 없는데 160만 건이 들어왔을 때 1만 5000건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0.9로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99%는 1차 수사권자의 결정이 그냥 바뀔 수 없는, 그렇게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과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아까 제가 있을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네.

박은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법사위 전체회의는 많은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술인들께서 오늘 공청회에 상정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셔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들께서도 검토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하고 같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나누고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대검과 고검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하는, 2개의 기관으로 나누는…… 거기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무부 안으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둔 이유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해서 법무부 내에 검찰의 입김이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전제하에서 법무부장관 속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것이고 그 수사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에 두는 이유는 법무부장관의 문민통제 때문입니다.

행안부에 두는 안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 두는 안은 말씀드리면 행안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청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 것인데 지금 법무부에 친윤 정치검찰이 포진을 하게 되면 중수청을 과연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회의가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안과 법무부장관 소속 안 두 가지를 모두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청 안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은 수사청에 있는 수사청장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사청장이 7개 범죄,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마약,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들을 수사청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란·외환을 민주당이 추가해서 8개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청장이 7개 범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수사청장이 굉장한 권한, 직접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청장은 수사지휘권이 없고 다만 수사본부, 저기가 이 7개 범죄를 3개의 본부로 나누어서 본부장들이 수사지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사청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가는 행안부 안인 민주당 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랑 민주당 안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은 행안부에 있는 중수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중수청과 국수본과 공수처 전체적인 수사권을 조정하게 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수사절차법을 형사소송법……

이것은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께서도 이 수사절차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절차법을 형사소송법에서 분리해서 수사만을 규정하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수사절차에, 국민들에 침익적 행

정행위인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인권 보장을 하면서 실체 진실을 가장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따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수사청에 있는 수사권, 수사와 관련된 것을 사법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권을 보장하는 검사제도에 맞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다만 수사청에 있는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라든가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함과 동시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검사가 이것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수사절차법과 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법을 보완해서 보다 바람직한 안으로 나중에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보다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김예원 변호사님, 보니까 아까 장애인분들하고 극빈이신 노인분들을 주로 무료 변론을 해 오신 거지요?

○진술인 김예원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제의식 중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실무적으로요. 몇 가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서 조사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권익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 감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예원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 공청회 준비를 하면서 8개의 법안을 보내 주셔서 천천히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이 법안들 자체도 지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법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만 제가 놓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 대리

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건 송치가 돼서 세컨드 찬스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할 것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더 써 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이의신청만 하다 보니까 그게 건당 330만 원인가 받는 변호사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짜였는데 몇백만 원이 드는 절차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이의신청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국수위법에 따르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을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중수청법에 따르면 고소인과 고발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수사절차법에 따르면 고소인만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또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용추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이 법안 내에서 서로, 진짜 연구 용역이라도 작게 돌리셔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비용추계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가, 심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사 변호사들도 형사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이 나와서 흐름도를 그려 봤는데 흐름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주진우 위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일단 결과로서 보여 줘야 되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됐어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계속 몇 년 했는데 사건 처리가 예전보다 지연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나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경쟁했을 때의 문제점, 사실은 주목받는 사건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사건은 여론의 흐름에 휘둘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데 여론에 휘둘리는 사건은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경쟁하고 수사권이 중첩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서민들이 보는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들을 보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서로 하려고 하면 좋은데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사건을 퉁겨 내려고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30만 원 인터넷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누가 뭘 사겠다고 해서, 서민 입장에서 30만 원 사기당하면 며칠 밤낮을 분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고발해 봤자 제대로 밝혀 주지도 않고, 만약에 중요 사건 수사하듯이 하면 당연히 밝힐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그런 절차적인 피곤함을 감수하고 그냥 피해를 감수하니까 사기범죄가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피해자의, 서민들이 보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예원** 제가 정말 체감하는 부분인데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있는 분들 사건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시체가 되신 분이나 아니면 학대 같은 걸로 인해서 중증장애가 된 분들만 변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 전에는, 체감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시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너무 많이 맞아서 장애인이 굉장히 더 중한 장애가 됐다 그런 사건은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은 죽었는데 CCTV가 없으면 입건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건을 여러 개 경험

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학대도요 막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전화하면 다 신고가 되고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게 방임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때리거나 굶기거나 어디 묶어 놓거나 이런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아주 지저분한 데서 아예 돌보지도 않고 그냥 동물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서 계속 핸드폰만 보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해도 입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건에는……

**○위원장 이춘석** 요약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예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집중이, 거기에만 많이 차출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지금 진술인들의 의견이 집중 현상이 있어서 다른 진술인들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표 위원** 김예원 변호사님한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네요.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 형사사건이고 그런데 일부 이른바 특수사건이라고 하는, 인지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검찰을 정치화시키고 망쳐 놓고 전 정부에 있을 때 거의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동원되고 이런 점은 다 인정을 하시는 편은 맞지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른바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삼아 놓고 수사를 계속해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들겨 패는, 그래야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 짚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순간 그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강제수사 한 것이 남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든 기소를 시키고 그래서 그게 무죄 같아도 기소돼서 법원에 트럭째 그냥 기록 갖다 부어 가지고 고생시키고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은, 그거는 알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개혁의 논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김예원 변호사님은 이대로 검찰을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진술인 김예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직접……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소 분리론의 그 수사라는 개념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서 스티커 붙이기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소 분리론의 그 수사는 직접·표적 수사……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김예원** 인지수사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소권과 연결됐을 때 부작용 커다는 거 인정하고, 다만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보완수사는 거기서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와는 별도로 봐야 된다……

**○김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인정하시고 그 부분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은 맞네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예원 예.

○김기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문규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약간 제가 듣기에는 좀 애매한 개념이었는데 검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든 수사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술인 황문규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사는 허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논리는 그 수사를 이용해서 검찰이 그것을 기화로 계속해서 수사를 확장해 나가고 그거를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지금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 교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게 개혁이 될까요?

○진술인 황문규 필요한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문제인데요. 저는 그 필요한 조사가 현재 검찰에서 악용하고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술인 황문규 그거는 법률에 명시할 수도 있고요 또 강제수사를 못 하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그 부분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김기표 위원 그 부분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김종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팔다리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막상 또 이런 문제는 있지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검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존 개념으로 얘기합시다. 검사하고 경찰관 중에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검사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경찰관이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진술인 황문규 법정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났다면 공소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수사를 한 사람은 경찰인데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닌가요?

○진술인 황문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경찰이 책임져야 되나요?

○진술인 황문규 그게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사가 미진했을 수도 있고요.

○김기표 위원 수사가 미진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인 황문규 무죄가……

○김기표 위원 무죄가 날 것 같아요, 수사가 미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술인 황문규 만약에 지금 현재 수사·기소 분리가 됐을 때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수사기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김기표 위원 이미 수사해서 넘겨 버렸는데 수사기관이 신경 쓸까요, 바쁜데?

○진술인 황문규 저는 그 부분은 수사기관들에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한다면……

○김기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고 의견을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직접수사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아예 없앨 것이냐, 보완수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면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로를 거쳐서 하게 하고 누가 책임지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이다.

제가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의 개혁,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절대 퇴보할 수 없는 대명제인데 문제는 그 부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김예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찰개혁안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황문규 김예원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건 묵살, 다소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현재의 제도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는, 지금보다 더 전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못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이 문제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경찰에게 그나마 2011년, 12년도에 수사 개시·진행권이 주어져서 예컨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같은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표 위원 직접수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확장되지 않게 하는 앙이 분명히 이성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술인 황문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검찰 수사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진술인 황문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김종민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은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에 1%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 놓게 되면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경찰국가로 전이 할 거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검찰, 검찰의 정치화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설계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만들면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맨 처음에 만들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더 큰 문제만 발생할 것이고요.

결국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9% 이상의 사건들에서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던 검찰의 효율성, 수사의 신속성 그리고 그 수사 역량 그리고 피해자 권리구제의 그런 여러 신속성, 이런 것들은 결국 99%의 사건에서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님?

○진술인 김종민 99%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 사건, 즉 형사부 검사들이 처리해 왔던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좀 지나친 말이겠지만 그동안 순기능이 절대적이었고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결국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인지수사였는데,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난데없이, 아무 문제없이 70년 넘게 잘 작동돼 오던 형사부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없앤 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자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예원 변호사님이 양홍석 변호사님의 글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 놓으셨던 데 거기에 보면 결국은 지금의 이 법안들이 너무나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 개혁이 방향이 맞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법들은 너무 많은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더해서 문제는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관련 형사소송법을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지만—기본 전제에 대해서—설령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것처럼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 내에서, 물론 그것을 수사절차법으로 분리해야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로 한다고 치더라도 수사절차 과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더 정치적인 거대 권력을 탄생시켜서 권력자의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훨씬 더 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예원 변호사님, 양홍석 변호사님의 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법에 아까 체계 정합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김예원 예, 물론입니다.

일단은 수사개시를 할 때 어디서 할지가 되게 불분명…… 아까 전에 표로 보여 주셨잖아요, 박은정 위원님께서. 그런데 보면 거기 ‘마약사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약사건’ 이렇게 네 글자이기는 한데 마약사건의 범위도 엄청 다양합니다. 단순 소지도

있고 제조부터 해 가지고 그 위법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마약사건이라는 게 딱 터지면 사실 이게 암장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가서 이렇게 속도가 생명으로 탁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개시할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해져 버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손해를 결국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사회가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쭈면 아까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걸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권리구제 절차는 단순할 수록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형사소송법과도 체계가 전혀 맞지 않고 이 법 내에서 각 기관 간의 권한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전혀 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 이런 지금의 법조문 가지고, 이런 제도 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요?

**○진술인 김필성** 지금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떤 어떤 법안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서 법안이 바뀔 경우에는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미세적으로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청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여기서 법안에서, 법사위 또는 국회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마 민주당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수사절차를 구성하는 수사 주체로서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들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뒤에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돼요,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권리구제 이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나아가서 사실 형사소송법 절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처럼 원래는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것을 지금 망각하는 듯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의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지금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을 것인가의 문제고요. 이것은 쭉 이어져서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로 민주당에서 낸 법안을 위주로 검토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김예원** 직접수사개시권 가지지 않고 보완수사 정도만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김예원 변호사님이 아까 제기하신 아동학대 이게 원래 검찰이 수사하는 범위인가요?

○**진술인 김예원** 검찰이,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전건 송치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아까 시체 사건 이런 게……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에 전건으로 가게 되어 있나요?

○**진술인 김예원** 예, 법조문 해석상 아동학대 사건은 고발로 들어온 사건이라도 일단 실무상 지금까지는 전건이 다 일단 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7개의 범주인데요. 거기에서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질문할게요.

우선 검찰이 부패와 경제사범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 김필성**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행령 정치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나요?

○**진술인 김필성**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서영교 위원**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사하면 잘못하나요, 김예원 변호사님?

○**진술인 김예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건이 어려워진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입건이 어려워진 현실?

○**진술인 김예원**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약자, 소수,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진술인 김예원** (고개를 끄덕임)

○**서영교 위원** 예, 그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없애는 이 모든 것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했어요,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그랬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부패하고 잘못된 자들을 바로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 김종민 변호사님, 아까 윤석열·한동훈 같은 검사가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셨지요?

○**진술인 김종민** 예, 동의하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판사·검사 그다음에 경찰은 퇴임 후 최소한 5년 이상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판사·검사, 고위직들은 최소한 퇴임 후……

○**진술인 김종민** 경찰도 포함됩니다, 경찰도.

○**서영교 위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직업에도 가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지

요?

○진술인 김종민 예.

○서영교 위원 화면을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김학의 사건입니다,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모두 다 저게 김학의라고 하는 것 알아요. 법무부차관 되고 나서 김학의는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학의 수사 관련해서 지지부진하게 해서 김학의를 무죄로 풀어 줍니다.

그다음 넘겨 보세요.

김학의를 무죄로 풀어 주게 되고요.

넘겨 보세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도 검찰이 무혐의 하고 또 재수사 착수해서도 무혐의 하고. 그리고 김건희도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에서 23억 이익 봤다고 했는데 다 무혐의 지은 게 검찰이에요.

또 뒤를 넘겨 봐 주세요.

검찰의 치욕들입니다, 치욕.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완전 하수인이에요. 치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진술인 모두 다가 검찰의 치욕을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예원 변호사의 이야기는 약자와 소수들의 이 아픔, 이 과정 속에서 소외받게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 안 되게 하는 이것을 수사 되게 해 달라, 약자와 소수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어 가는 일이 없게 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검찰개혁안에서도 그 내용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데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면서도 어떤 법안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법안들을 통해서, 오늘 진술인들께서는 법을 내신 분들도 아니고 법안에 대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이 법안들이 또 조금씩의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게 계속 조언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또 수사의 효율성 문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에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황문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

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햇불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태워 버릴 수 있는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제도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여론의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런 사건의 수사로만 보면 검찰개혁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이 됐을 경우에 정말 국민들에게는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니까 무조건 검찰부터 때려잡고 봐야 된다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김종민 지금 그 논의에서 크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사법의 제1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는 이차적 목적입니다. 지금 라임·옵티머스 사건같이 수조 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각종 코인 사기 그다음에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이런 사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과연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초대형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대응할 수 없다고 할 때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범죄, 중대범죄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수사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맞습니다.

○진술인 김종민 그런 부분들이 전연……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더 있어서……

그래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 물론 있을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것은 좀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지금 기관의 입장에서의 개혁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률 시장의 큰 변화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을 사고 또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이 있다시피 적절하게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변화가 있고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다변화됐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데 전혀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제대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지금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검찰개혁 문제 그다음에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문제는 국가적인 어떤 사법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최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한 기관도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폭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

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찰도 어떻게 하면 더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우리가 절차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김필성** 예.

○**신동욱 위원** 왜냐하면 일단 개혁라는 이름하에 상위법부터 이렇게 막 바꿔 놓고 나서 그사이에 그 시차에 따라 생기는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김필성** 예.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지는 것보다도 지금 발의된 4개의 법안과 함께 이런 절차법도 동시에 논의돼서 최대한 인권침해가 없고 또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혹시……

○**진술인 김필성**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도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공수처법이, 공수처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공수처를 일단 출범시키고 출범시킨 이후에 공수처를 제대로 보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공수처가 사실 방치됐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절차, 이런 구조개혁 법안들이 그런 이유로 미뤄지게 되면 아마 쭉 밀려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방법을 동시에 논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신동욱 위원** 동시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진술인 김필성** 동시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시행 원안을 주잖아요, 언제부터 실행하는 것처럼. 시행 원안을 미리 하는 것으로 입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이렇게 논의하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 공수처법처럼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 편향성, 과소수사,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지금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봐줄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안 하고 자꾸 정치적인 사건들 몇 퍼센트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권한 집중 때문에 사건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도 재판을 해 보면 10개의 범죄사실 중에 가장 가벼운 한두 개만 기소하고 8개 정도를 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헌국회 때부터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몰아주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되면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제헌국회 때부터 문제가 됐고 벌써 70년, 8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일제 친일 경찰을 국가 인력으로 많이 흡수하는 바람에 경찰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준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군사정권 또 국정원이 득세하던 안기부 시절 이럴 때, 보안사 시절에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권력기관으로서 도움만 주다가 결국 노태우 정권 때 그런 기관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제일의 합법적인 권력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생시킨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큰 골격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문규 진술인께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법 제명을 공소청법으로 그대로 두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명을 검찰청법으로 그대로 하면서 검사의 권한을 기소 부분만 한정하자는 것인지…… 명칭, 헌법상 관계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진술인 황문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에 찬성하고요.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개혁을 똑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잡음 또는 빌미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희승 위원** 그것은 어쨌든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진술인 황문규** 예.

**○박희승 위원** 그리고 김종민 진술인께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잘한 부분도 있지요. 저희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왜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검찰에게 로비를 많이 하는 그런 권력기관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자라든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지요. 사실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저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는 것은 정말 칠판십 년 된 오래된 숙제이기 때문

에 이번에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계속 검찰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진술인 김종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을 검사의 보조자로서 지휘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사인력을 두고서 직접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갖고 그래서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지금 검찰이라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기관을 갖다가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겁니다. 사법경찰은 전체 경찰의 2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법경찰로서 경찰이 있는 거고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독일도 다 선진국이고 다 우수한 경찰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수사절차에서의 민주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민주당 법안처럼 왜곡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그런데 과거에 영장실질심사 도입할 때도 지금처럼 검찰의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1년에 한 육칠태만 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실질심사 시행 이후로 한 팔구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가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범죄가 늘어나거나 혼란스러워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이성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영장 심문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파면이 됐고 구속취소된 지 123일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구속의 기로에 있는데요.

저는 영장청구서가 보도가 됐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줘라. 경찰은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 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지냈던 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말하기 낯부끄럽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믿는 구석, 정치검찰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은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내란장관 김용현을 기소해서 추가 구속되게 만들고 발족하자마자 무려 20일도 안 돼서 윤석열 내란 수괴에 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정말 특검의 필요성을 제대로 입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1월 26일 날 기소하고 소극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 걸 두고 견제도 하지 않고 또 추가 수사해서 기소한 것도 없었습니다. 특검이 기록을 본 지 며칠 만에 추가 기소하고, 특검이 기록을 본 지 19일 만에, 20일도 안 돼서 다시 추가 기소할 정도로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은 6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검찰을 믿고 어떻게 자기의 운명·생명·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 사유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하면서도, 정말 PPT 100장을 띄우면서 무혐의를 4시간 동안 강변하는 걸 보고 법치주의는 죽었다, 검찰은 죽었다 했습니다. 올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놓고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데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냉큼 바로 석방해 준 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검찰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데 제가 직접수사를 받아 보고, 무려 4년간 재판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성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 법안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 검사가 약 2300명, 그렇지요? 수사관이 약 600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6000명 그리고 검사 2300명은 어떻게 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김필성 일단 전체적인 수사 수요 그다음에 공소적 근거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의 총합은 일치하는 거니까요. 지금 하고 있던 인력들이 적절히 재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제외한 수사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수청 중심으로 이동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검사들 이외에는, 물론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이상 검사가 아닌 수사에 대한 법적 판단과 통제를 위

한 위치로 그렇게 재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만 이의 사건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술인 김필성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사실은 4개 하면서 미세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이나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적정성 통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종래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검찰에서 검찰항고·재항고라는 식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동일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내에서 다시 리뷰하는 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겠어? 검사가 고검에서 이걸 제대로 보겠어?’라는 식의 그런 의구심들이 실제로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국가수사위원회 부설에서 통제하는,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분리돼 있는 별도의 제3의 절차에서 이거를 리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절차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독직행위나, 사실 여기 아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험해 본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제가 알기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그때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 부분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이었어요, 지금 재심 판단받고 있는 사건들도 일반 형사사건들이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검찰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구조는 그런 것들을 제3의 기관에서 별도로 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수사의 적정성 통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그다음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김필성 진술인님,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핵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필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에 집중된 형사사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경찰 그리고 기소 그다음에 수사의 권력을 수사 원칙,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견제하고 통제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송석준 위원 견제·균형?

○진술인 김필성 예.

○송석준 위원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진술인 김필성 국민을 위한 거지요.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검찰개혁안이 그거에 굉장히 충실히 잘 반영됐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지금 정합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필성 정합성은 사실 좀 더 만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방향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바로 조금 이따 법안들이 상정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김필성 저는 내용이나 기본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의신청권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러 가지 헌법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이런 현상들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진술인 김필성 헌법은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 지금 잘 아시겠지만 헌법 내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어쨌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국민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협행법이고 그것이 집행되면 무서운 형사법제로서 강제력이 이렇게 수반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김필성 예, 저는 그러기를……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김예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사법 현장의 답답한 현실, 특히 1차 검찰개혁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 또 결과적으로는 민생에,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필성 예.

○송석준 위원 김예원 진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필성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고소·고발해서 시간이 오래되거나 경찰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김필성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법안들이나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되고,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석준 위원 그래서 아직도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차 개혁 이후의 그것도 좀 다듬어서 더 안정시켜 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필요한 걸 모아서 정합성과 헌법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더 하자고, 좀 시간을 갖고 하자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진술인 김필성 제가 아까 말씀……

○송석준 위원 지금 이게 급한 거는 우리 정치권력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빠른,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더 많은 복잡성을 가중시킨다면 결국은 점점 어려워져서 민생들은 더 힘들어하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 가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주장하는 게, 추석 전에 꼭 해야 될 이유에 공감하세요?

○진술인 김필성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송석준 위원 그게 권력에 의한 필요 아닙니까?

○진술인 김필성 아니, 그렇지는……

○송석준 위원 국민들은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김예원 진술인님, 지금 같은 진술인끼리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다시 한번 친절하게 그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김예원 지금 하드웨어를 만든다, 어떤 체계를 개편한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을 짓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공장 부지에 공장들이 있었는데 다 부수고 새 공장들을 짓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정교하게 돌아갈지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톱니바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톱니바퀴를 정말 숙의해서, 제대로 설계해서 전문가가 심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 톱니바퀴에 깔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많이 배우지 않은 그런 대부분의 서민 사람들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그리고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비싼 변호사를 사십니다. 그런데 일반 변호사조차 살 수 없는, 변호사 문턱도 가기 어려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제도가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 갈려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멈추고 천천히 봅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석준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의 목적이 뭐냐?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소위 권력을 위한 개혁이 아니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 아니냐,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 이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제도의 기본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하다가 무너졌어요. 바로 이재명 정부도 이념적·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민생과 직결된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결정적인 정권의 난맥상을 또 그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박지원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민주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윤석열을, 한덕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적 요구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윤석열 정권이 보여 줬던 검찰의 모습은 제가 20년간 몸담았던 검찰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상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라는 그 한 가지 제도 때문에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상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종철은……

○**박지원 위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검찰은 경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법사위에서 수년 전 검경 수사개시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검찰은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명령’과 ‘복종’이 두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했는지 몰라요. 과거 박종철이 그랬으니까 경찰은 못 믿는다? 그러면 그 많은 인혁당 간첩 조작 이것은 국정원이 했으니까 검찰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궤변이에요.

○**진술인 김종민**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지원 위원** 그렇잖아요.

○**진술인 김종민** 프랑스하고 독일에서도 검사의 지휘에 사법경찰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개별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진술인 김종민** 약간의 하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큰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는 고칠 수가 있지만 원칙적인 문제를 마치 아닌 양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술인 김종민**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 하세요.

김예원 변호사님.

○**진술인 김예원** 예.

○**박지원 위원** 지금까지 99%의 형사부 검사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1%의 정치검사들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 김예원** 예, 동의합니다.

○**박지원 위원** 개혁해야지요?

○**진술인 김예원**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전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공청회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고 우리 법사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

을 하시는 김 변호사님께서 마치 정치검찰 그러한 사람들의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예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지원 위원 하세요.

○진술인 김예원 위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사법연수원에 오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야 정말 사회적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됐다는 것,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검찰이 양평고속도로를,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김건희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저것 보세요. 김성훈, 그 믿었던 경호처 1차장도 마음을 바꾸잖아요. 왜? 특검이 잘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검찰은 봐주고 덮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문면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배운 사람들이, 저는 비법조인이에요. 배우신 분들이 그러한 약간의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만 발언을 안 하셨지요?

○장경태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 발언을 해 주시고, 진술인 여러분들 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나서 잠깐 한 1~2분 정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김종민 변호사님,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해야 됩니까, 일로 계산해야 됩니까?

○진술인 김종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필성 변호사님,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답변 마지막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 김필성 아까……

○장경태 위원 예, 아까 질문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진술인 김필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검찰개혁을 이렇

게, 이게 제도적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잖아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일단 한 번에 결정을 한 다음에 맞춰 가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국민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 중 하나인 형사사법 절차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하고 잘 맞추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저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것은 신속하게 한 번에 이루는 게 가장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빠르게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황문규 교수님, 지금 국수위, 국가수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저는 그렇게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걱정하신 분들은 독임제였던,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기관도 무소불위라고 말할 정도면 독임제 행정기관이었던 검찰총장·경찰청장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때도 여권이 임명하는, 사실상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던 기관들은 어떻게 믿었으며, 합의제도 못 믿는 분들이 독임제를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국수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황문규 아까 어떤 분이 PPT에 그려 가지고…… 국무총리 밑에 국가수사위원회, 그 밑에 각종 수사기관을 배치해 놨는데 사실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런 상위기관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황문규 장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외부적 감독기관이지 상위기관이 전혀 아니고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독임제 행정기관보다 독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낮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도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께서 자꾸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진술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PPT에서 공수처·중수청, 경찰이든 국수본이든 그것을 마치 상위기구처럼 그려 놨을 뿐이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황문규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를 들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 위에서 군림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급기관도 아니고요, 물론 민간 방송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사기관들의 중첩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이의 제기도 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수위가 하라고 이의신청 기능도 주고 수사심의신청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사기관의 독선적인 행태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수위에 조정 기능과 논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부여한 거잖아요. 아니, 수사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국수위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국수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제도적인 구성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황문규 .....

○장경태 위원 아니, 수사기관이, 독임제 행정기관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의신청해도 그 수사기관장이 수사하겠습니까? 상위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는 혹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어찌 됐건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아니, 수사 좀 똑바로 하게 해 주세요'라는 신청 기구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 안 하는데 경찰서장, 지방청장, 위의 본청장 다 보고돼서 수사 안 하는 것일 텐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에서 다 지휘하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수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수사 하라고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관할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 하는 부분,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라고 이런 국수위 같은 것 출범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황문규 맞습니다.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지배하는, 검사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검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했지만 통제 측면에서는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사권이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다원화됐는데 이것을…… 기존에 통제하던 기관이 없어졌습니다.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다 이렇게 다원화됐는데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이들끼리 싸우는 것, 수사권을 둘러싼 경합·중첩 이런 부분, 그런 불합리한 면을 봐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자고 그리고 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자고 두는 것이 국가수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향후에 국가수사위원회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번에 입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뜻깊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진술인들한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할 때 꼭 이것만은 고려해 달라라든가 반영하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각 진술인마다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님부터 순서대로 2분 한도 내에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예원 진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미 우리는 많은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 평통을 거듭하

며 공중으로 증발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보완 요구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낫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수사의 일관성과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국민 중에는 제가 대리하는 더 못 가지고 더 배우지 못한 분들이 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두시고 이 안의 결판을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달려가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봤을 때 조정할 것이 많고 뭔가 설익었다라고 보이면 멈추고 자세히 보면서 그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용기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심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필성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검찰개혁 논의를 하면 몇 가지 숨어 있는 편견·전제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일 먼저 짚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원리하고 효율성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특히 현재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원래는 효율성 문제하고 일정 정도 모순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입법부·사법부·행정부라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한 곳에 권한을 다 몰아주면 효율성이 가장 올라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기본구조를 가져오는 이유는 효율성을 일부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효율성은 현재가 제일 나을 수 있어요.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갖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효율성은 제일 높을 수 있지만 그게 갖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배치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할 때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를 건지를 먼저 전제를 해서 구조를 구성한 다음에 그 내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를 순서를 맞춰서 바라보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시스템을 볼 때 동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숨어 있는 전제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우위성입니다. 검사가 가장 똑똑하고 검사가 가장 우월하고 검사가 가장 일을 잘하기 때문에 통제 권한도 검사에게 줘야 되고 검사가 들여다봐야 되고 검사한테 맡겨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검사도 자기 역할을 맡은 공무원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사통제도 검사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상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검사의 우월성에 대한 그런 전제를, 편견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님.

○**진술인 김종민** 오늘 검찰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서 검사가 수사지휘하고, 반대로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가장 견제와 균형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거대 경찰권력의 탄생입니다. 13만의 경찰 병력 그리고 방대한 정보 경찰, 거기다가 집권 정치권력이 직접 국가수사위원회를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통치의 탄생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 문제야 많았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신 위원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간에 검사장 승진도 하지 못하고 퇴임했지만 그런 분들 입에서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검찰 해체의 최선봉에 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이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사사법제도를 적어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집권 민주당에서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검찰개혁은 정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물으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황문규 교수님……

○**서영교 위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 김종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입니다.

○**서영교 위원** 완전 반대……

○**진술인 김종민** 김용민 위원님이 저하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활동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진술시간 다 쓰셨습니다.

황문규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황문규** 검찰개혁의 시간이 지나면 곧 경찰개혁의 시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대 경찰 이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정권 말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이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법을 이행을 해야 될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그 법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이 생겨난 겁니다. 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그 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행정부가 그 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실 분들을 선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12.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1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1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0)

(16시49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하시는 바와 같이 이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간사님들이 합의해 주셨습니다.

법률안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여야 각 세 분씩 그리고 개혁신당 박은정 위원님 이렇게……

○박은정 위원 저는 조국혁신당입니다.

○곽규택 위원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서 일곱 분 대체토론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은정 위원 저 대체토론한다고 안 했는데요.

○김용민 위원 안 하실 거예요?

○박은정 위원 예, 저는 안 합니다.

○김용민 위원 안 하신답니다. 그러면 셋, 셋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세 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아니,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두 번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현안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차관께서 취임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권 남용과 편파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그래서 그런 과오가 있었고 검찰이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검찰의 지난, 그동안의 그런 과오로 인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수사·정치공작 사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지금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차적으로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사안만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에서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자기가 작성한 것은 평당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올렸는데 검찰이 그걸 15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추가해서 검찰이 작성해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시인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김용 부원장에게, 당시에 3년 전에 압수조서에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게 이것은 명백히 증거가 있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였는데 거기에 뜯금없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그런 조서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다, 대장동 수사가. 이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은 특정한 표적을 정해서 이런 정치공작이나 또 조작수사를 통해 거기에 없는 죄도 만들어 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의 전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였다, 그래서 김용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증거와 범죄 혐의를 쭉아서 수사하는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검찰의 정치공작에 가까운 그런 수사였고.

또 최근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것은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진술세미나, 연어·술 파

티 등을 회유했던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작 사례의 대표적인 사안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지금 짜깁기 골프 사진 이걸 증거로 제출을 한 것 이것은 증거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듯 최근만 하더라도 검찰의 조작수사·공작수사가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금 사실상 화두가 되고 있고 이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요.

김건희 사안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16개 범죄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다 무혐의했거나 수사조차 안 했거나 조사를 해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특검이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무능했거나 아니면 교활했거나 정치권력에 출복한 그런 하수인이었거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자정이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내부의 감찰을 요청했는데 차관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공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내부 감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난번에 감찰을 하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러서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희가 앞으로 진행 경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확인하고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정영학 씨나 배상윤 씨는 범죄 혐의자가 맞지요, 이분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수사·재판 중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동욱 위원**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오신 분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수사해서 그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지금 수사·재판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언론플레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얘기를 입니까, 비중 있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현재 수사·재판 중인 대상자이시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술인으로 나오신 김예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소수자 인권보호의 변호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약자들의 호소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출속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출속으로 막 진행됐을 경우에 그 중간에 부작용이 너무 큰데 그 부작용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조차도 잘못하면 나중에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보신 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에서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부작용 이런 것들 조사한 거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1차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건 처리의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보고서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를 보니까 과거 검찰보다 굉장히 잘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잘하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물론 정치적 논리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뒤집어 표현하면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네 분의 진술인들도 이게 지금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법무부 입장은 이게 부족하더라도 속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이런 것만 갖다 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논의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몇 년씩도 논의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추석 전에 무슨 결론을 내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형사사법제도는 사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께서 개혁된 이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효용과 편의 등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특히 공수처는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수사해 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봉사하면 수사권·기소권 다 주고 그거 아니면 박탈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다른 수사기관의 평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쌍방울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무부차관, 이게 ‘민들레’라고 하는 언론이네요. 언론에서 나오기를 ‘권성동에게 대북 송금 검찰 로비 위해 48억 줘’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돈까지는 몰라 가지고…… 어쨌든 녹취도 나오고, 쌍방울 얘기에서 왜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VIP 얘기가 나와요. 그때 VIP는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파고 파고 팠는데 그것 관련해선 안 나오고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가 사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장동에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살 수 있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얼마의 우연의 일치예요?

저는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얼마까지 끼어들어 있었는지, 어디에 얼마나 해 먹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부인은 도이치모터스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샤텔백에 디올백에 21그램에, 이거 전부 다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왜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 부분 이렇게 따옴표 쳐서 나온다면 이 부분 정확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오늘 검찰개혁 4법을 내놓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대체 검찰은 그렇게 이재명을 수백 번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범인은 딴 데 있었어요, 윤석열과 그 일당들. 이런 게 검찰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 검찰들 전부 다 낱낱이 찾아서 처벌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께, 오늘 국민께도 한번 알려 드리게 말해 볼게요.

저 화면입니다. 김학의 씨입니다, 김학의. 김학의가 출국하려고 해서 저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누가 김학의일까요? 앞사람일까요, 동그라미 쳐진 사람일까요? 아무리 봐도 앞의 사람이 김학의 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김학의 씨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 놓고, 김학의 씨가 저 뒤에 동그라미 쳐진 사람으로 몰래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저렇게 몰래 도망가려고 한 것을 제보를 받아서, 정말 기가 막히지요. 앞사람이 김학의인 줄 알았어요. 저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 출국금지를 시켜 낸 겁니다.

뒤로 넘겨 봐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김학의 씨가 다시 잡혀 오고, 저 뒤의 사람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위장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화면.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이성윤, 저 검사들입니다. 저 검사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지휘해서 저들을 전부 다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법원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 줘서 올 6월에 대법원이 다 무죄를 해 줬어요.

정의는 바로 섭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끝내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부정부패를 다 휘두르고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세상은 전부 다 정의롭게 바로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나쁜 검찰들 다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쳐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사법부 입장은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 권력기관, 행정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라서 의견 내기는 적절치 않지만 그렇지만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큰 사업이고 그리고 흔히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형사재판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런 개혁의 모든 결과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는 곳으로 다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수사 그리고 그 위에 공소유지 그리고 진행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 이 3단계로 나눌 때 제일 기층에 있는 수사가 이번에 입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형태로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을 대개혁하는 것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법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외환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주었고 이제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날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개를 끄덕임)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순서입니다.

○송석준 위원 천대엽 처장님, 지금 법조 경력 몇 년째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30년 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30년 넘으셨지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공약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많은 공약집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여러 가지……

○송석준 위원 사법개혁에 다 공감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많은 부분들, 즉 참여재판의 확대라든지 또 온라인 코트(court)라든지 판결문 공개 확대라든지 그리고……

○송석준 위원 그런 자세한 건 됐고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일부 법안이,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선 공감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헌 문제에 속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갖다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충실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맞습니다.

이진수 장관대행님, 법조 경력 몇 년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25년 정도 됩니다.

○송석준 위원 25년 정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상정된 법안이 또 그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수사 분리 원칙 하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든 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직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충실히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석준 위원** 해야 되겠지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하면 검찰과 법원, 검사와 판사는 같은 사법고시나 또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임용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만큼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춘 분들이 임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인데 그런데 이번의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또 거기에 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수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수위는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부분은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송석준 위원** 진행해야 되겠지요?

어떤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이 정한 바를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국가의 결정이 어떤 행위, 예를 들면 국수위의 결정이 다른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배해서 또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어떤 결정행위가 다른 법률의 효력을 능가할 수가 있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게 정상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직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단계니까, 만약에 그런 게 돼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소지가 좀 있다고 보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런 지위와 변경 내용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그래요.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77년간 헌정질서 유지해 오면서 갈고 다듬고 해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오랫동안 다듬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온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또는 무슨 헌법재판소의 소원 대상으로 사실제에 가까운 것을 하겠다 또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

검찰의 해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 해체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분노에 찬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그런 검찰개혁 돼서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석준 위원** 맞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분노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법적 관계, 국민적인 관점에서 따져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차관, 오늘 공청회에 있었던 네 가지 법률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총론적으로 현재의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그다음에 이것을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이 세 가지 구조거든요. 찬성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법무부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낼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검찰개혁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차관의 입장은 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기존의 검찰권 행사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었고 수사 대상의 선별이라든지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들이 많았었고 그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요?

차관, 오늘 윤석열 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된 지 123일 만에 다시 재구속의 기로에 있어요. 윤석열이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법원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성윤 위원**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 자꾸 검토 중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럴니까?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도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서, 또한 오늘 심사가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뭐가 부적절합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경찰한테 총을 니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라. 경찰은 니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고요? 아니, 차관이 검사 시절에 이런 사람이면 구속 안 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계속 검토 중이다, 부적절하다’, 그러면 언제 의견을 밝힐 겁니까?

이런 이유는 말이지요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이 사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은 계속 무혐의 하고 봐주고 면죄부 주고 특정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은 계속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오늘 대체토론에 나오면 차관 입장에서 ‘지금 장관 안 계시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검토 중이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 올린 것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본인도 올려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는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올리는 것은 내부 의견 소통입니다, 아니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내부 의견 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장인데 그 내용들이 외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사례가 아니고 내부에 올리면 바로 외부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이게 사법시스템을 혼드는 트로이 목마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

○**이성윤 위원** 검찰에 지금 권순정 검사장 있지요? 사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직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권순정 검사장이 6월 23일 날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 맞습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요 ‘검찰 수사가 특검이라는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 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 더 나아가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무의미해 질 것’, 이런 말을 썼어요.

차관님, 읽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상세한 내용까지는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이프로스에 올리는 것은 이건 국민들한테…… 검찰에 대응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이번에 검사징계법이 개정됐잖아요. 이것 확인해서 반드시 징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 전에 우리 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조 모 씨에게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청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40억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님의 입장문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언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 모 씨가 민주당 측에 무슨 통화 녹취록을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것이 금전 요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은 조 씨가 주장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과 액수는 이미 들었으니 해당 내용은 반복할 필요가 없고 대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입장문 나온 것을 보니까, 입장문 나온 게 있으니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성윤·이광철·차규근·이규원 검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대법원에서,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똑같은 무죄판결을 한 대법원에서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꾸 미국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TF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차관님, 검찰에서 조작 기소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이화영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조작 기소라고 하면, 검찰은 정말 그러면 안 되지요. 조작 기소하시면 안 되지요. 조작……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자꾸 무로 돌리려는 이런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예요. 지금 법무부 입장은 얘기 들으니까 아직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검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개별 검사들의 생각까지는, 제가 대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이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공소청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영장 청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장 청구는 누가 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배숙 위원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한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영장 청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경찰에서 해 가지고 지금 검사를 통하여 돼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사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도 좀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건을 잘 알고 또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이러는데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검사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수사 보완이나 이런 지휘권이 전혀 없는 검사가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영장청구권을 검사한테 준 그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게 좀 희석되거나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가수사위원회 있습니다. 이게 합의제고 선임 관계를 보면, 임명 관계를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합의제니까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있잖아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의신청 이것은 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이걸 다 받아서 하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많은 이의신청을 국가수사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못된 제도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포함해서 제도 설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쟁점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청회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나 부작용이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검토를 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의 소속 정당과 관련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출석 진술인

김예원(변호사)

김필성(변호사)

김종민(변호사)

황문규(교수)